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69
----------	------

제출연월일 : 2015. 9. 1.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법에 따른 기관으로 개정(안 제4조)
- 나. 상위법에 설치 근거가 없는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다.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에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사업자 지원 규정 신설(안 제10조)
- 라. 상위법에 맞게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공표시기 개정(안 제11조)
- 마. 상위법에 없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삭제하고, 법에 따른 녹색제품 판단기준 신설(안 제13조)
- 바. 상위법에 없는 녹색제품 구매예외 규정을 삭제(제14조)
- 사.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범위 확대(안 제19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5년 8월 3일 ~ 8월 17일(15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가. 부서협의 기간 : 2015년 8월 3일 ~ 8월 17일(15일간)
- 나. 협의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사회복지과)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하남시 환경보호과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5조부터 제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제11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을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로,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를“**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녹색제품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I 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4. 제17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제품은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 할 수 있다.

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 3. 학교법인
- 4. 종교시설
- 5. 체육시설
- 6. 산업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환경보호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환경보호과장 박건석
	팀장 직위·성명	환경관리팀장 김현아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임영보 (790-5581)

현행	개정안
<p>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u> 2. <u>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u> 3. <u>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및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u> 	<p>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 ----- <u>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제2장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u></p>	<p><u><삭 제></u></p>
<p>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① <u>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② <u>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③ <u>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지원국장이 된다.</u></p> <p>④ <u>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사회복지과장·회계과장·환경보호과장·자원관리과장·건설과장이며, 위촉위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시의회의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회원, 산업계 대표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u></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⑤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p>	
<p>제6조(협의회)의 기능) <u>협의회</u>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 2. <u>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u> 3. <u>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u> 4. <u>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u> 5. <u>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u> 6. <u>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u> 7. <u>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u> 	<p><삭 제></p>
<p>제7조(회의) ① <u>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u></p> <p>② <u>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u></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8조(간사) <u>협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 담당주사가 된다.</u></p>	<p><삭 제></p>
<p>제9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0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 3. (생략)</p> <p><신 설></p> <p>4.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p>	<p>제10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u></p> <p>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p>
<p>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p> <p>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p>	<p>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p> <p>① <u>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u> -----</p>

현행	개정안
<p>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시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p>제13조(녹색제품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I 등급제품, 대기 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4. 제17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제품은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p>

현행	개정안
	<p>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p>
<p>제14조(녹색제품 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p><삭 제></p>
<p>제19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p> <p>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9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p> <p>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현 행	개 정 안
② ~ ③ (생략)	<u>출자한 공기업</u> <u>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u> <u>3. 학교법인</u> <u>4. 종교시설</u> <u>5. 체육시설</u> <u>6. 산업계</u> ② ~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5.3.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